

Ⅲ - 10	제 목	겸업의 경우 전기공사업 자본금	
회신일자	2010-04-03	회신방법	지경부 전자민원
질 의 요 지			
○ 전기, 통신, 전문소방, 기계설비 면허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경우 자본금이 6.5억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2 ~ 6억원, 상시 근무하는 3 ~ 5인 이상의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이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이 다르고, 기술인력도 상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별표3에서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다른 업종과 겸업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2억원을 초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 업체가 여러 업종을 겸하여 등록한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